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
----------	-----

제출년월일 : 2002년 5월 일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3.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 주민들이 자치참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조정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하향조정

- 주민의 수 : 350명 ⇒ 200명(감15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 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02.3.23 실시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바. 조례·규칙심의회 : 제6회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02.05.02)원안의결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50명” 을 “200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차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 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야 하는 주민의 수는 <u>350명</u> 이상 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 200명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